수정 계약서

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 2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전자 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칭함)와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38-1번지에 위치한 청송시스템 주식회사 (이하 "을"이라 칭함)는 1996년 7월 3일자의 합의각서(이하 "합의각서" 라칭함)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.

제 1 조 Royalty 통보

Qual완료후(1997년 6월 10일) 제 3자에게 장비를 공급할 경우에 공급업체, 가격, 수량, 일정등 공급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"갑"에게 다음과 같이 반기별 1회 서면 통지한다.

-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: 7월 10일까지 통보
-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: 1월 10일까지 통보

제 2 조 Royalty료

"을"은 "갑"이외의 제 3자에게 장비를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에 매출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간 매출액의 2%를 "갑"에게 지불하되, 매출 발생시점은 제 3자의 장비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 단, SEC 판매분에 대해서는 Royalty 지불의무가 없다.

제 3 조 INVOICE 발행

"갑"은 제 1조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이견이 없는 한, 이를 토대로 "을"에게 해당 Royalty에 대한 INVOICE를 송부하며 "을"은 INVOICE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"갑"에게 Royalty를 지불한다.

제 4 조 계약 기간

이 수정 계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제 3자에 대한 장비 매출 발생 시점으로 부터 3년까지 법적효력을 지닌다.

제 5 조 기 타

이 수정 계약서에서 언급된 이외의 조항들은 합의각서를 따른다.

삼성전자 주식회사	청송 시스템 주식회사
HB: Ho Keyen Chang	MB: GK GUI
४४ उरे	성명:
직위: 사용무	직위:
일자: 1992. 11. 11	일자:

합의 각서

본 합의 각서는 1996년 7월 3일부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2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칭함)와 경기도 평택시 모목통 438-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송 시스템 주식회사(이하 "을"이라 칭함)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- 배 경 -

"갑"과 "을"은 "갑"이 자체 개발하여 "을"에게 기술 이전한 Poly Dry Etch용장비(이하 "장비"라 한다)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각서를 작성한다.

- 내 용 -

제 1조 【신의 성실 및 미 공개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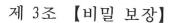
- (1) "갑"과 "을"은 본 합의 각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합의 각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 하지 아니한다.
- (2) "갑"과 "을"은 또한 본 합의 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의 및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후 시행한다.

제 2조 【지적 재산】

- (1) "갑"과 "을" 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"갑"의 소유로 함에 동의한다.
- (2) "을"은 "갑"이 본 계약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하여 장비를 제조함에 사용할 수 있다.
 그러나 지적 재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"을"의 책임으로 귀속됨에 동의한다.
- (3) 또한 "갑"과 "을"은 본 계약 이후에 발생한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선 출원주의에 의거 각사 소유로 함에 동의한다.

5. 1. 1700N

GK5



"갑"과 "을"은 본건과 연관되어 획득한 각종 정보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본합의 각서와 별도로 체결된 "상호 기밀 유지 각서"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.

제 4조 【구매 및 판권 제한】

- (1) "을"은 "갑"에게 장비를 공급시 제조 원가 및 필수 부대 비용 이외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로 산정 하여 공급할 수 있다. 단, 공급가는 최혜적인 조건으로서 "갑"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(2) "을"은 장비 입고후 장비 Qual. 완료전 "갑"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며, 이 기간이 지난후 제3자에게 장비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업체, 수량, 일정등 공급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"갑"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장비 Qual. 완료 기준은 "갑"과 "을"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(3) (2)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장비 Qual. 기간이 장비 입고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, 1년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"갑"이외 제3자에게 장비 를 제공할수 있다.
- (4) 그러나 (2)(3)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"갑"의 장비 구매 요구가 있을 경우 "을"은 "갑"에게 최우선적으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한다.

제 5조 【Royalty】

"을"은 "갑"이외 제 3자에게 장비를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 하였을때에는 매출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간 년 매출액의 2%를 "갑"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.

제 6조 【제3자 기술 이전】

"갑"과 "을"은 "을"이 "갑"이외 제3자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시점에서 "갑"이 장비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"갑"이 "을"에게 기술 이전한 것과 같이 "을"외 제 3자에게 기술 이전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.

5.7, MOON

4165



본 합의 각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합의 각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삼성전자 주식회사

MB: 5. Y. 1700N

성명분 상명

직위: 이 사

일자: '96, 7.3

청송 시스템 주식회사

MB: Gla Guy

성명:/ / / (/)

직위:MmolKL

일자:1*66.1.*3